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14호 2014. 1. 3.(금)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2013-548호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 규칙 ——2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013-277호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 —————7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2)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48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무에 관하여” 를 “복무에” 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이라 함은” 을 각각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자를” 을 “사람을” 로, “기능직” 을 “일반직” 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능직 공무원” 을 “일반직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으로 한다.

제3조 중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로” 를 “복무는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로 하고,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를 “에 따른다.” 로 한다.

제4조 중 “「사천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을 “「사천시 공무원직 근로자 관리규정」 및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3)

제7조제2항 중 “자로” 를 “사람으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 자로” 를 “나이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로,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자” 를 “사람” 으로, “면제자로” 를 “면제받은 사람으로” 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경과하지” 를 “지나지” 로,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파산자로서” 를 “파산선고를 받고” 로,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제1항 중 “지원자” 를 “으로 지원하는 사람” 으로 한다.

제16조제4호 중 “「무기계약근로자 관리 규정」” 을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58세로” 를 “만 60세로” 로, “당해연도” 를 “해당연도” 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휴직된 자는” 을 “휴직한 사람은” 으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회개하게” 를 “잘못을 뉘우치게” 로 한다.

제44조제2호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한도 내” 를 “한도” 로, “면한다.” 를 “지지 않는다.” 로 한다.

제10조제3항, 제45조 중 “범위 안” 을 각각 “범위”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4)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 제35조 중 “자는” 을 각각 “사람은” 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제24조제3항 중 “말은바” 를 각각 “말은”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제43조제6항 중 “자” 를 각각 “사람” 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미화원의 정년은 제17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까지는 만 59세, 2015년부터 만 60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5)

【별표 1】

환경미화 종사원 근무시간(제32조 관련)

구 분		근 무 시 간	휴 계 시 간
하 절 기 (3월~10월)	평 일	05:00~17:00	07:30~09:30(2시간) 12:00~14:00(2시간)
	토요일	05:00~09:00	없음
동 절 기 (11월~2월)	평 일	06:00~17:00	08:00~09:30(1시간 30분) 12:00~13:30(1시간 30분)
	토요일	06:00~10:00	없음

※ 천재지변, 작업 여건 및 작업량, 각종 행사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6)

【별표 2】

환경미화원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34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본인	90
	배우자	5
유산 또는 사산	본인	최대 9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그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7)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77호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2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일상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14호(8)

〈별표〉

일 상 감 사 범 위 및 시 기

분 야	일상감사 범위	일상감사 시기
1. 공 사	공사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시행 품의 전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준공 및 기성검사 입회
	일상감사 대상공사 중 설계 변경 20%이상 증액	설계변경 시행 품의 전
2. 용 역	건설기술용역 2,000만원 이상	용역 시행품의 전
	학술·연구용역 및 일반용역 2,000만원 이상	
3. 물품구매	구입금액 1,000만원 이상 단 조달구입 제외	물품구입방침 시행품의 전
4. 기 타	주요정책의 집행, 계약 및 예산 관리업무, 주택, 건축, 위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